

북한 당규약 개정 주요내용 (' 20.1.)

□ '46년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 노동당 수반, '위원장' → '총비서'

* △(총비서 추대) 김일성('66.10.), 김정일('97.10.), 김정은('21.1.) △김정은을 '수반'으로 지칭

○ '제1비서' 신설

○ '선군정치'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채택

○ '병진노선' → '자력갱생'

*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

○ 통일과업 부분 수정

*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 →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

○ 국방과업 부분 신설

*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

○ 김정은 체제 사상교양사업의 기반인 '5대 교양' 일부 내용 변경

*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을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으로 대체

○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이름 및 '주체', '선군' 등 선대 관련 용어 배제

○ 노동당 중앙조직 권한·운영 수정

- 당대회 정례화(5년), 정치국 - 정치국 상무위원회 간 역할 분담

* △(정치국) 전원회의 소집, 당사업 조직지도 △(상무위원회)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 문제 토의결정, 당·국가 중요간부 임면문제 토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당 총비서 위임에 따라 정치국회의의 사회

-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 비서 선거 △당규약 수정·집행

- 당중앙검사위원회 기능 추가(기존 재정·감사 → 규율문제심의·신소청원 추가)

○ 노동당 입당·탈당 조항 수정 및 당원·당조직 역할·책임성 제고

북한 당규약 비교표

□ 서문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①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의 (최고강령 성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u>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u>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u>
② 수반중심	<p>(* 김일성, 김정일 사상과 구체적 업적 나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 시키시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u>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u>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③ 당의 목표 (통일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u>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u> 있으며 최종목적은 <u>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u>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u>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u> 있으며 최종목적은 <u>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u> 있다.
④ 통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당이 인민대중과 <u>혼연일체를 이루며</u>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찰하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대렬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꾸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 나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u>인민대중과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u>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u>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u> 끝없이 빛내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u>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밑에 조직규율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운다.</u>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⑤ 비사·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시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 조류 등을 반대배격하며 <u>로동계급적원칙,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u>을 견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u>당의 사상과 배치되는</u>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시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u>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u>을 견지한다.
⑥ 영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u>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u>을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자주, <u>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u>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u>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u>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u>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u>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⑦ 인민대중 제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u>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u>으로 확립하고 <u>선군의 기치</u>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 조선로동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u>정신력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u>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u>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u>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u>하고 <u>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u>를 실현한다.
⑧ 경제·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 시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쳐나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u>자력갱생의 기치</u>밑에 경제건설을 <u>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u>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u>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u>하고 <u>자립적 국방공업</u>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⑨ 통일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와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u>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u>하고 <u>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u>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u>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륜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u>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u>철거</u>시키고 <u>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u>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u>철저히 배격</u>하고 <u>강력한 국방력</u>으로 <u>근원적인 군사적 위협</u>들을 제압하여 <u>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u>을 수호하며 <u>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u>를 높이 들고 <u>조국의 평화통일</u>을 앞당기고 <u>민족의 공동번영</u>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본문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① 당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조선로동당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율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② 입당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근로자들이 될수 있다. (개정)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수 있다.
③ 후보당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특수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단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p>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p> <p>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이 입당할때에는 시, 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개정)</p>	<p>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p> <p>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때에는 시, 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p>
	<p>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이다. (개정)</p>	<p>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p>
④ 당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p>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개정)</p>	<p>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p> <p>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이론, 주체의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p>
	<p>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p> <p>당원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 로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p>	<p>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p> <p>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p>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p>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u>군사중시기품을 세워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전투동원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u>하여야 한다. (개정)</p> <p>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 대중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개정)</p> <p>7) 당원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내야 한다. 당원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하여 모든 것은 바치며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업 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며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의 본보기가 되고 자신과 가정, 집단을 혁명화하는 데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개정)</p> <p>8) 당원은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쏘아박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p>	<p>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u>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u></p> <p>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u>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자리에 높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제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u>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p> <p>7) 당원은 <u>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u> 한다. 당원은 <u>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8) 당원은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u>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u></p>
⑥ 당원 권리	<p>• (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u>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수 있다.</u>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u>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탈당을</u> 요구할수 있다. <u>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u></p>
⑦ 당원 책벌	<p>• (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개정)</p>	<p>• (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u>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u>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개정)</p>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⑧ 당원 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조) 정당한 이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u>않고있는</u>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조) 정당한 이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u>않거나 3년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u>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⑪ 당의 조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p><u>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맡게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u> (제12조 → 제11조 2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u>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u> <u>각급 당 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u></p>
⑬ 도·시·군당 조직·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p><u>당조직의 조직과 해체정형을 시, 군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에, 도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⑳ 당조직 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p><u>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u></p>
㉑ 당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p><u>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당대회 소집 날짜는 여섯달전에 발표한다. (개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p><u>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한다.</u></p>
㉒ 당대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u> 2) <u>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u> 3) <u>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u> 4) <u>조선로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u> 5) <u>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u> 2) <u>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u> 3) <u>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u> 4) <u>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u> 5) <u>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u>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㉔ 당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조) <u>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한다. (개정)</u>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조) <u>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령도한다.</u>
㉕ 당중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u>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개정)</u>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u>제1비서, 비서</u>들을 선거하고 <u>비서국</u>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u>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u>한다. <u>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으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u> <u>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u>
㉖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조) 당중앙위원회 <u>정치국</u>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u>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u>
㉗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조) <u>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명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u> <u>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u>
㉘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조)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조) 당중앙위원회 <u>비서국</u>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㉙ 당중앙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u>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 (개정)</u>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u>혁명무력을 강화</u>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u>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u> <u>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u> <p>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u>공화국무력을 지휘</u>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p> <p><u>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u></p>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㉑ 당중앙검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조) <u>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규률을 어긴 당원에게 당적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도당위원회의 제의와 당원의 신소를 심의하고 처리한다. (개정)</u> (31조) <u>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삭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조) <u>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 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u>
㉒ 도·시·군당 대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u>5년에 한번씩</u>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㉓ 도·시·군당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u>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개정)</u>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 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u>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u>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u>당중앙의 령도</u>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u>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u>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㉔ 도·시·군당총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녉달에 한번 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달에 한번 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녉달에 한번 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달에 한번 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u>책임비서, 비서</u>들을 선거하고 <u>비서처</u>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u>검사 위원회</u>를 선거한다.
㉕ 도·시·군당 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u>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u>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㉔ 기층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당원이 5명 못되는 단위에는 따로 당세포를 조직하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들과 후보당원들을 가까이 있는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사업의 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두 개이상 단위의 당원들을 합하여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삭제)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당원이 3명 못되는 단위에는 시, 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이 31명 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이 61명 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이상의 당조직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놓을 수 있다.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당원이 60명을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이상의 당조직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놓을 수 있다.
㉔ 기층당조직 지도기관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조) 기층당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 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조) 기층당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 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㉔ 기층당조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p>초급일군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 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개정)</p> <p>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u>위대성교양, 김정일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u>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췌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개정)</p>	<p>초급일군들을 <u>당에</u>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 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p> <p>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u>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u>,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췌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한다.</p>
④7 조선인민군	<p>· (47조)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u>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몸소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무장력이다. (개정)</u>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 (삭제)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개정)</p>	<p>· (47조) 조선인민군은 <u>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u> 혁명적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u>군사</u>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p>
④9 조선인민군 내 당조직	<p>· (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당의 유일적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확고히 세워 인민군대안에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당의 참된 전사로 <u>튼튼히 준비시킨다. (개정)</u>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한다. (개정)</p> <p>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u>그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운다. (개정)</u>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개정)</p>	<p>· (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u>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u> 위하여 투쟁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군체계를 <u>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u> <u>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u> <u>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대안에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u> <u>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u>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u>지도한다. (개정)</u></p>

구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p>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 없이 완성하도록 한다.</p> <p><u>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u></p> <p><u>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개정)</u></p>	<p>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 없이 완성하도록 한다.</p> <p><u>《일당백》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 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u></p> <p><u>군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u>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p>
<p>㉔ 조선인민군 내 정치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u>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 (삭제)</u>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 한다.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 한다. (개정)
<p>㉕ 인민정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조)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권이다. (삭제)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u>인민정권은</u>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p>㉖ 근로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조) 근로단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 단체이다. (삭제)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이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당의 정치적후비대이다. (개정)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u>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u>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